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도체 등 기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으로 조정하여 우대하는 한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우대 규정 신설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조정(안 제7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으로 조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로 창업기업을 우대하고자 함.

나. 창업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 제출 횟수 확대(안 제7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창업기업을 우대하고자 함.

다. 전문연구요원의 창업기업으로의 전직 허용 규정 마련(안 제85조)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전직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 창업기업을 우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을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을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5조제3항제7호 중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을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생략)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2.~7. (생략) ②~④ (생략)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2.~7.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생략)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

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1.~6. (생 략) 7.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8.~13. (생 략) ④~⑩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1.~6. (현행과 같음) 7.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8.~13. (현행과 같음) ④~⑩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38